

# 임시직 건설 근로자이십니까?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디샵" 또는 임시직 직업소개소라 하는 건설 인력 중개자를 통해 일하고 있다면, 본인은 이민 상태 또는 이전 체포 기록과 관계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2022년 6월 9일 자로 NYC 현장의 건설 업무 또는 육체노동을 알선하는 건설 인력 중개자는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갖추어야 하며, 건설 근로자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귀하의 제 1 언어로 필수 공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1. 인증 고지

이 고지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 교육 및 그 외 지정 사항과 그에 따른 해당 건설 인력 중개자의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고지는 고용이 되기 *전에* 안내받아야 합니다.

## 2. 권리 고지

이 고지는 안전 휴가 및 병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지,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산업재해 보상, 실업 보험, 차별 없는 직장, 보복 금지 등을 비롯한 주요 근로자 보호 조치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이 되는 시점에 안내받아야 합니다.

## 3. 업무 배치 고지

이 고지는 직업 배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호 의류, 임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고지는 특정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새 건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안내받아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또는 DCWP 에 불만 사항 제기하기:

- [nyc.gov/workers](https://nyc.gov/workers) 방문
- 311 에 전화해 "construction labor provider(컨스트럭션 레이버 프로바이더)"라고 말하기

또한 주 법원에서 건설 인력 중개자를 고소해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ric L. Adams  
Mayor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Vilda Vera Mayuga  
Commissioner